

Implementing rules of VAT exemption facilities for state defence/security needs ^{P1}

Income Tax and VAT treatment for taxpayers under certain gross turnover threshold ^{P2}

국가 국방/안보 요구에 따른 VAT 면제 시설 규정 시행

재무부("MoF")는 HPP 법 ¹의 일부로 개정된 부가가치세(VAT)법 제 16B 조 시행에 관한 정부 규정("GR") GR-49²를 발표한 후 국가 국방/안보 요구에 따른 특정 전략 과세 상품/서비스의 수입 또는 인도의 VAT 면제 절차에 관한 규정 PMK-157³을 발표했으며, 이는 GR-49에 통합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[TaxFlash 2022년 제 24호](#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거래를 수행하는 시설은 이전에는 GR-38⁴ 및 KMK-370⁵에 따라 관리했습니다. GR-49의 시설 개요 외에 PMK-157은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합니다.

1. 특정 상품 정의

PMK-157에는 무기, 탄약, 레이더 등의 정의를 포함하여 이전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여러 관련 상품이 정의되어 있습니다.

2. 대상 상품 목록

PMK-157에는 무기, 탄약, 방탄 헬멧/재킷/조끼, 특수 육상 차량, 레이더 및 예비 부품과 이들의 통합 시스템(HS) 규정 분류에 따른 대상 상품 사양에 관한 자세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3. 국영기업 범위

VAT 면제 혜택은 국방 산업에 종사하는 국영기업(State-Owned Enterprise, SOE)이 수입 또는 구매하는 특정 부품 또는 재료에 적용됩니다. PMK-157에

¹ Law No.7 Year 2021 dated and effective from 29 October 2021 regarding Harmonisation of Tax Regulations (*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/HPP*)

² GR No.49 Year 2022 (GR-49) dated and effective from 12 December 2022

³ MoF Regulation No.157 Year 2023 (PMK-157) dated 28 December 2023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4. PMK-157 revokes KMK-370.

⁴ GR No.38 Year 2003 (GR-38) dated and effective from 14 July 2003

⁵ MoF Decree No.370/KMK.03/2003 (KMK-370) dated 21 August 2003 and effective from 14 July 2003

따라 SOE 는 정부 또는 정부가 정관에 규정된 특수 권리를 가진 지분을 소유한 사업체(기업 또는 PT)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본금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(기업 또는 유한책임회사[Perseroan Terbatas/PT])로 정의됩니다.

4. 면세 공문 절차

PMK-157 에는 각 자격 대상 거래에 대해 VAT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면세 공문(Surat Keterangan Bebas/SKB) 신청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또한, PMK 에는 각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정보/문서가 포함된 SKB 프로세스(예: 신청, 거부, 대체, 취소)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. SKB 프로세스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며,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기로 수행됩니다.

5. 상품을 초기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추가적인 예외 사항

GR-49 에는 4 년의 기간 동안 시설에서 사용하는 상품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설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. 단, GR-49 에는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예외 사항은 국방 산업에 종사하는 SOE 가 다음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
- 국방 또는 안보 분야의 공무를 수행하는 부처 또는 정부 기관으로의 이전;
- 담배, 알코올의 중독성 물질을 제외하고 마약,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, 기타 중독성 물질의 남용 및 불법 밀매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비내각 정부 기관으로의 이전.

6. 시행 위반

본 PMK 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할 경우 납세자는 지불해야 할 VAT 외에 제재금도 지불해야 합니다. PMK-157 에는 각 조건에 대한 과세 대상 사건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

특정 총 매출 기준액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및 VAT

MoF 는 연간 총 매출액이 IDR 48 억 미만인 납세자("소액 납세자")에 대한 소득세 및 VAT 에 관한 규정 PMK-164⁶를 발표했습니다.

본 최종 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세 및 납세자 기준은 기존의 규정과 거의 동일합니다. 이러한 개정은 대부분 GR-55⁷ 및 HPP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새로운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(즉, 연간 총 매출액이

⁶ MoF Regulation No.164 Year 2023 (PMK-164) dated and effective from 29 December 2023 and revokes MoF Regulation No.197/PMK.03/2013 on the Limitation on Small Entrepreneur for VAT and MoF Regulation No.99/PMK.03/2018 on the implementation of GR No.23 Year 2018 regarding the Income Tax on income from taxpayers having certain gross turnover

⁷ GR No.55 Year 2022 (GR-55) dated and effective from 20 December 2022

IDR 5 억인 개인은 비과세 대상이며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). 또한, 이러한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PMK-164 에는 적격 법인 납세자에 마을 소유 기업(Badan Usaha Milik Desa/BUMD) 또는 공동 마을 소유 기업(Badan Usaha Milik Desa Bersama/BUMDB)이 추가되었습니다.

주요 VAT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PKP 로 지정되기 위한 요구 사항

PMK-164 에는 소액 납세자를 중심으로 VATable 기업(Pengusaha Kena Pajak/PKP)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원칙적으로 납세자는 회계연도(FY) 중 총 소득이 IDR 48 억("기준 한도")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이 PKP 로 지정된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. PKP 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또는 직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본 PMK 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간 총 매출액이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소액 납세자와 관련된 VAT 신고 의무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.

- 1) 연간 총 매출액이 해당 회계연도의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:
 - 소액 납세자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자신의 사업을 보고하고 PKP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- 해당 신청서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납세자를 PKP 로 지정합니다.
 - VAT/사치품에 대한 판매세(LST)는 다음 회계연도의 첫 번째 과세 기간부터 징수,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.
- 2) (1)의 소액 납세자가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 또는 직권으로 PKP 로 지정된 이후 자신의 사업을 보고하는 경우:
 - VAT/LST 의 징수, 납부 및 신고에 대한 의무는 납세자가 PKP 로 지정된 과세 기간부터 시작됩니다.
 - 단, VAT/LST 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이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이후의 첫 번째 과세 기간부터 납부해야 합니다. 첫 번째 과세 기간부터 납세자가 PKP 로 지정될 때까지의 VAT/LST 는 VAT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.
 -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과세결정서한(Surat Ketetapan Pajak) 또는 벌과금통지서(Surat Tagihan Pajak)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- 3) (1)의 소액 납세자가 연간 총 매출액이 기준 한도를 초과한 회계연도 이후 첫 번째 과세 기간 이전에 PKP 로 지정되길 원하는 경우:
 - PKP 로 지정되기 위해 소액 납세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여기에 VAT/LST 징수, 납부 및 신고를 시작할 과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.
 - 해당 신청서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납세자를 PKP 로 지정합니다.

- 소액 납세자는 PKP 지정 공문에 명시된 과세 기간부터 VAT/LST 를 징수,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.

또한, PMK-164 에는 소액 납세자의 연간 총 매출액이 기준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PKP 로 지정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PKP 가 VAT/LST 징수, 납부 및 신고를 시작하는 시기에 관한 일부 예시는 PMK 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.

경과 규정

PMK-164 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
1. PMK-164 가 제정되기 이전 달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이 기준 한도를 초과했지만 PKP 로 지정되지 않은 소액 납세자의 경우 이들의 VAT 신고 의무는 PMK-164 조항을 따릅니다.
2. BUMD/BUMDB 의 소득세 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-c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drian Hanif
adrian.hanif@pwc.com

Irene Satyanagara
irene.satyanagara@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kma Alam
sukma.alam-c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rendro Supriyadi
surendro.supriyadi-c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Made Natawidnyana
made.natawidnyana@pwc.com

Susetiyo Putranto
susetiyo.putranto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-c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-c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vinash Rao
a.rao@pwc.com

Marlina Kamal
marlina.kamal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Nicholas Sugito
nicholas.sugito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Nikolas Handradjid
nikolas.handradjid@pwc.com

William Christopher
william.christopher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Novie Mulyono
novie.mulyono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Esa Perdana
esa.perdana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www.pwc.com/id

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4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

